

의안번호	2212160
의 퇴 인	한정애의원
회 답 일	2025.11.5.
추계번호	25D4392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38조의2제1항 등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·운영 등)	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·경보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예보·경보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난 예보·경보 표준체계에 따라야 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8조의2제1항 등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·운영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재난 예보·경보 표준체계 마련 및 적용(안 제38조의2제1항 등)

-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·경보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¹⁾은 재난 예보·경보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난 예보·경보 표준체계를 따르도록 규정함
- 개정안에 따라 재난 예보·경보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적용하는 경우, 표준 체계에 대한 정책연구용역, 기존 재난 예보·경보 체계의 보완 또는 개편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국립재난연구원에서 2022년 정책연구용역으로 「재난경보시스템 연계기술 표준개발 연구」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난경보시스템 표준체계를 정립한 바 있어 개정안에서 규정한 재난 예보·경보 표준체계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
- 다만, 재난 예보·경보 표준체계의 적용 시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시스템의 표준체계 부합 여부, 보완 및 개편의 범위,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 - － 참고로, 현행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
 - －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속, 정확하게 재난상황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예·경보 체계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, 2025년 예산 기준 150억 2,700만원 편성
 - －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적인 재난 예·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(예: 세종특별자치시 차량통제 및 침수알림 시스템 등)

1) "재난관리책임기관"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,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)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